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시행 2018. 9. 21.] [산림청고시 제2018-87호, 2018. 9. 21.,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8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가. 산림사업용 종 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 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i>ex) 녹.</i>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범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 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 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i>ex) 윤기자</i>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 부산물류 <i>ex) 나무</i>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송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 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 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 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미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 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을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사업 추진방향
 - 라) 사업비 투자계획
 - 마) 사업별 추진일정
 - 바) 생산물 판매계획
 - 사) 기대효과

3.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87호, 2018. 9.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다목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8호, 2019. 7. 9.,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9. 22.>

②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1. 26., 2013. 4. 16.>

1. 주산단지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시행일 : 2012. 7. 1.]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 부 칙 <2019. 7. 9.>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